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조성연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803-145377	신청일	2018-03-15 19:47:26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조성연		
연락처	062-263-3854	휴대전화	010-7496-2587
주소	[61131]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115번길 10, 101-405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cse0713@nate.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 해석(재정 운용 성과 평가 기본계획 통보시점)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 제5항에 “제4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평가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규정됨

2017년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업무를 2018년도에 평가하는 경우

제5항 “평가 해당 연도”를 2017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2018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평가 기본계획 통보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설) “평가 해당 연도”를 2017년도로 보아 교육부 훈령에 의거 2017년 2월 28일까지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는 설과

을설) “평가 해당 연도”를 2018년도로 보아 2018년 2월 28일까지 기본계획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시도교육청 재정 업무를 2018년도에 평가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

획을 언제 통보(2017년 2월 말까지 인지, 2018년 2월 말까지 인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연락처) 변중석 (044-203-6998)
 접수일 2018-03-16 09:43:5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168970
 답변일 2018-03-28 13:39:25
 답변내용 1.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AA-1803-145377)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 해석에 관련한 민원을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요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의 해당연도에 대해 문의

나. 민원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의 해당연도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규정 제4조제5항의 해당 연도라 함은 평가를 시행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2018년도에 평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를 2018년도로 보아 기본계획을 2018년 2월 말까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팀 변중석 주무관(044-203-6998, bjongsuk8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8.04.06.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 <추가 질문 드립니다. < br>< br>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 br> 저의 질문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평가 운영 규정」이라

함) 제4조제5항 중 "평가 해당 연도"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도"가 아니라 "평가 해당 연도"입니다.

(2017년도 업무 평가 가정)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혁신정책과에서는 "해당 연도"를 2018년으로 해석하여 2017년 8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평가 운영 규정에서 매학년도 시작 전이라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 내용 ⇒ 규정은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평가의 내용, 목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운영 규정에서 매학년도 시작전이라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나 "매학년도 시작 전"은 초·중·등 교육법 제24제 제1항에서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기본계획 통보 시점을 매학년도 시작전 즉 3월 1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교육부 훈령으로 8월 31일까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 등 취지에 비추어 평가 운영 규정 제

4조제1항의 “해당 연도”는 “2017년도” 해석하여야 평가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통보 시점(전년도 8월 31일)이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 5항의 “평가 해당 연도”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과는 “해당 연도” 만 언급하면서 “2018년도”로 해석하였습니다. 학교혁신정책과에서 답변한 “해당 연도” 그대로 해석해서 “2018년도”로 해석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것은 “해당 연도”가 아닌 “평가 해당 연도” 로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재차 강조)

 이 “평가 해당 연도”에 대해 재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과에서 “평가 해당 연도”를 “2018년도”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항에 따라 1개월 이내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 대해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답변일(추가)

2018-04-12 14:11:05

답변내용(추가)

- 민원요자: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의 평가해당연도에 대해 문의

- 민원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규정 제4조제5항의 평가해당연도라 함은 평가를 시행하는 현재 연도입니다.
 - 나)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의 대상이 아니라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의2의 대상이며 행정기관 간의 업무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팀 변종석 주무관(044-203-6998, bjongsuk8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첨부파일(추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8.04.16.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	<평가를 시행하는 현재의 연도가 애매함>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인쇄